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06

발의연월일: 2022. 7. 12.

발 의 자:문진석・김교흥・김병기

민형배 • 변재일 • 송갑석

양향자 • 윤영덕 • 이용빈

이형석 · 정필모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굴착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돌하여 치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,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고가 발생함.

현행법은 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,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,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 상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굴착기, 불도저,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,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3).

법률 제 호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원동기장치자전거의"를 "원동기장 치자전거, 건설기계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	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
중처벌) ① 「도로교통법」 제	중처벌) ①
2조에 규정된 자동차· <u>원동기</u>	<u>원동기</u>
<u>장치자전거의</u> 교통으로 인하여	장치자전거, 건설기계의
「형법」 제268조의 죄를 범한	
해당 차량의 운전자(이하 "사	
고운전자"라 한다)가 피해자를	
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	
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	
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	
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
라 가중처벌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